

IV. 프랑스

□ FY2010 : 2010년 1월 ~ 2010년 12월

- 2010년 예산안(PLF 2010)은 2009년 9월 30일에 의회에 제출되어 12월 18일에 의회에서 통과되었음
- 2010년 1월 20일에 2009년 하반기부터 개선된 경제상황을 반영하고 350억유로 규모의 국채발행계획을 포함한 수정예산(PLFR 2010) 발표

□ 출처

- 2010년 예산안(PLF 2010: Le projet de loi de finances pour 2010)
- 2010년 예산안 관련 언론공개 자료 (프랑스 정부 발표)
 - Les grandes lignes, Les chiffres clés 등
- 2010년 본예산 (LFI 2010: Loi n° 2009-1673 de finances pour 2010)
- 2010년 수정예산 (PLFR 2010: Projet de loi de finances rectificative pour 2010)
- The EEAG Report on the European Economy 2009, European Economic Advisory Group at CESifo, 8th edition.
- Labour Market and Wage Development in 2008, EC Economic and Financial Affairs, European Economy Volume 2009, Issue No. 08.
- 기타 정책자료: <http://www.vie-publique.fr>, <http://fiso.fr>,
<http://www.relance.gouv.f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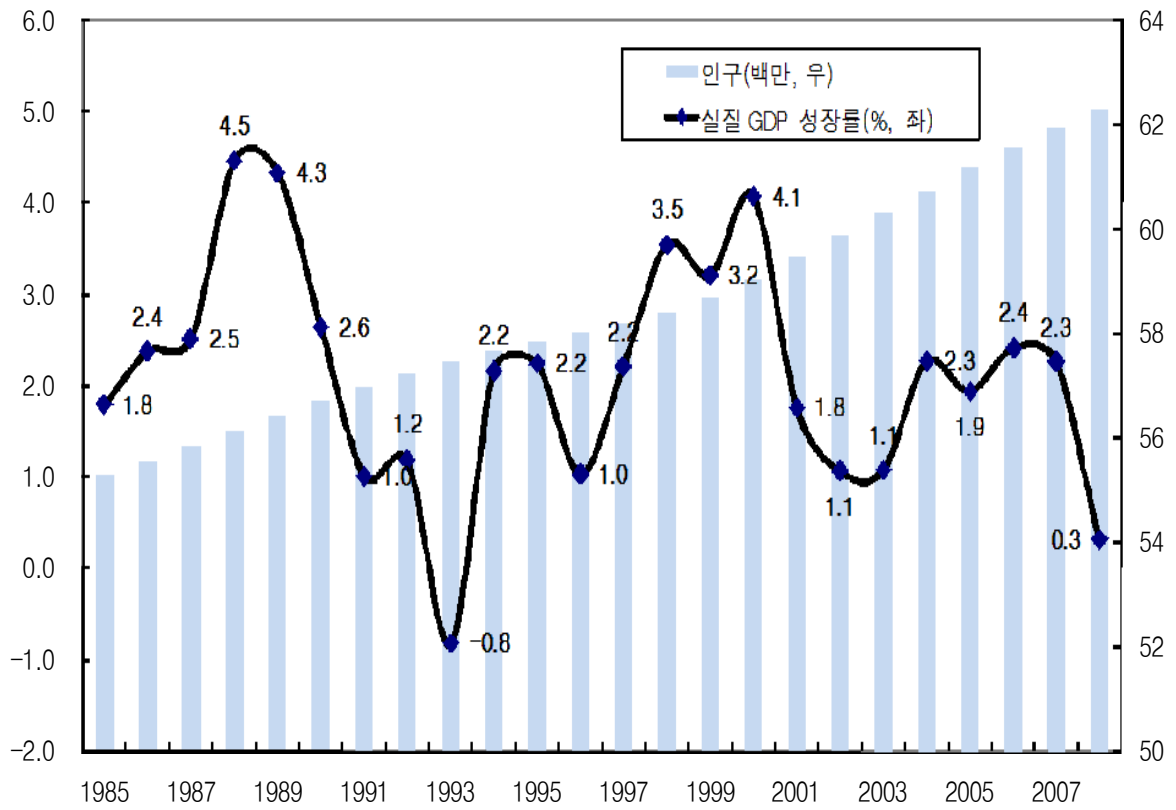
□ 환율 : 1유로 = 약 1,774.4원 (2009년도 평균)

□ 경제규모 : 2008년 경상GDP 2조 1,217억달러(우리나라 1.6배 수준)

□ 수출입의 대GDP 비율(명목) : 2008년 기준 55.4%(우리나라 107.0%)

□ 인구 : 6,412만명(2008년 기준)

□ 지난 10년간 GDP 및 인구 추이



◇ 경제 및 재정전망

- 2008년 경제위기로 인한 충격에서 벗어나 회복세를 강화해 나갈 것으로 전망, 고용부문의 부진을 제외하고 대외환경 및 국내수요의 대부분이 성장을 상향 견인할 것으로 예상됨(수정예산의 전망은 기존보다 더욱 긍정적)
- 2010년 재정수지 적자는 GDP 대비 8.5%(1,173억유로)로 예측하였으나, 최근 경기회복과 대규모 국채발행계획을 반영하여 GDP 대비 8.2%(1,492억유로)로 전망

◇ 예산기조

- 2010년 예산안(PLF 2010)은 최악의 경제 불황에 대비, 1) 작년에 이어 주요 경제위기대응정책을 연장 및 시행하며 2) 미래성장산업을 육성 및 지원하고 3) 지출통제를 통한 재정적자 감소를 주요 내용으로 함
- 기업 세제혜택 확대(사업소세 개혁, 연구개발비관련 세금공제, 부유세 감세)와 녹색성장을 위한 탄소세 도입을 통해 기업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함
- 친환경자동차 지원 등을 통한 녹색성장산업 및 미래 성장을 위한 대학교육 및 연구투자개발부문 투자 확대

◇ 예산안 내용

- 예산안 (PLF 2010) : 2010년은 경제위기 대응정책 관련 재정지출이 2009년에 비해 감소하나 사업소세 개혁으로 세수입이 크게 줄어들면서 재정적자(GDP 대비 8.5%)는 전년도에 비해 약간 증가

- 수정예산 (PLFR 2010): 2009년 하반기부터 개선된 경제상황을 반영하고 12월에 대통령이 발표한 대규모 국채발행을 포함하여 수정예산 발표
 - 상향조정된 경제성장률(0.75% → 1.4%)을 반영하고 대규모 국채발행 관련 비용을 포함하여 재정적자는 GDP 대비 8.2% (예산안보다 319억유로 증가)로 전망

◇ 주요 재정정책

- 경제위기 대응조치: 2010년 위기 대응정책(Plan de relance) 관련 예산규모는 70억유로로 주로 기업친화적인 세금공제, 자동차산업지원정책, 저소득층 지원 및 고용확대 정책으로 사용될 예정
- 재정건전화: 2008년 이후로 정부지출을 강력하게 통제, 2010년에도 경제위기 대응정책을 제외한 정부지출부문(일반회계)은 연간 물가상승률 이상 증가하지 못하도록 통제
- 고용촉진·지원: 위기 이후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확대 및 관련기금 조성, 청년층 등 고용증대를 위한 기업 세제지원 및 관련제도 정비 또는 유연화. 장기적으로 고용 관련 공공서비스의 질 향상 노력, 노동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평생직업) 교육 강화를 위한 각종 제도 마련 및 지속 추진

1. 경제 및 재정전망

가. 경제전망

- 2010년 프랑스 경제는 2008-2009년의 경기침체를 벗어나 2009년 2분기부터의 회복세를 이어갈 전망
 - 세계 경제가 전반적으로 회복 국면에 들어섬에 따라 글로벌 수요가 증대, 수출을 촉진하면 투자증수 증가 등을 통해 성장세를 이어갈 가능성이 있음
 - 2010년 수정예산⁶⁾ (PLFR 2010)에 따르면 프랑스가 위기로 인한 충격이 덜하고 회복이 빠르며, 특히 본예산 발표 이후 수요부문의 회복세가 두드러진다고 평가, 이로 인해 경제전망의 상당 부분을 상향조정

- 그러나 고용사정의 부진, 금융부문의 불안정성, 재정적자 규모 확대 등은 회복세를 저지하고 재정 측면에서 건전성 강화 노력을 요구하고 있음

6) 2010년 1월 11일까지 유효한 정보를 토대로 전망

<표 IV-1> 프랑스 거시경제 전망

(단위: 십억유로, %)

변수	2008	2009	2010 본예산	2010 수정예산
GDP	1,950	1,932	1,970	1,973.6
실질성장률	0.4	-2.25	0.75	1.4
명목성장률	2.9	-0.9	2.0	2.5
가처분소득증가율	0.6	1.5	1.0	1.7
가계소비증가율	1.0	0.6	0.8	1.4
기업투자증가율	2.6	-7.9	0.6	0.6
수출	-0.2	-11.4	2.6	3.7
수입	0.8	-8.8	3.4	3.6
소비자 물가	2.8	0.4	1.2	1.2
무역수지	-55.5	-47.6	-47.8	-45.0
재정수지(GDP 대비)	-3.4	-8.2	-8.5	-8.2

자료: Les chiffres clés, PLFR 2010.

- (경제성장률) 2009년 실질GDP가 -2.25%에서 2010년 0.75%로 상승할 것으로 전망(예산안)하였으나 2010년 1월 수정예산(PLFR)에서 OECD⁷⁾와 같은 1.4%로 상향 발표
- 기존 전망이 실업 등 고용사정의 심각성을 반영, 매우 신중한 접근이었던 것에 비해, 현재 고용이 다소 상향조정되고 수요부문도 보다 긍정적으로 전망됨에 따라 성장률 역시 상향조정
- (인플레이션) 경기 침체 여파로 인해 인플레이션은 2010년에도 1.2%로 높지 않을 것임(OECD 전망은 이보다 낮은 1% 내외)
- (기업투자) 2009년 전년 대비 -7.9% 감소한 데 반해 2010년에는 전년 대비 0.6% 증가할 전망. 단, 금융환경 악화, 디레버리지, 실적 부진 등으로 인해 큰 폭의 성장은 어려울 것으로 보임

7) OECD, Economic Outlook No. 86 (November 2009) pp. 159~163

- (가계소비) 정부의 직접지원(전체 직접지원 450억유로에 대해 가계부문이 지원이 140억유로), 낮은 인플레이션 및 대외조건 개선에 힘입어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2009년 0.6%에서 2010년 0.8%)
 - 2010년 수정예산(PLFR 2010)은 2010년 전망치를 전년 대비 1.4%로 상향조정
- (고용 및 실업) 2010년에도 고용시장 불황이 예상되나, 전년도에 비해 개선되고 있으며 2010년 말에는 정상화될 것으로 예상
 - 실업은 2007년 5월에서 2009년 11월 사이에 21% 증가(미국은 동기간 124% 증가), OECD는 2011년 초 이전까지는 실업률이 10% 내외
 - 2010년 수정예산(PLFR 2010)은 예산안보다 일자리 감소분을 축소 전망하는 등 더욱 낙관적인 수치 제시
- (기업금융환경) 상대적으로 금융부문의 타격이 적었던 프랑스는 기업금융환경 측면에서도 여전히 다른 국가들에 비해 상황이 나은 것으로 평가

나. 재정전망

<표 IV-2> 프랑스 2001-2010년 재정총량 (예산안 기준)

(단위: GDP 대비 %)

연도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수정 예산포 합)	2010 (LFI 기준)
세출	51.6	52.6	53.3	53.2	53.4	52.7	52.3	52.7	55.6	55.9
세입	50.0	49.5	49.2	49.6	50.4	50.4	49.6	49.3	47.4	47.4
재정적자 (마스트리히트 조약기준)	-1.5	-3.1	-4.1	-3.6	-2.9	-2.3	-2.7	-3.4	-8.2	-8.5
국가부채 (마스트리히트 조약기준)	56.9	58.8	62.9	64.9	66.4	63.7	63.8	67.4	77.1	84.0

자료: INSEE(경제 및 통계연구기관) 및 예산청 자료 참조해서 작성. 2008년까지 자료는 INSEE 자료, 2009년 이후 자료는 예산청 자료임

- 2010년 재정수지 적자는 GDP 대비 8.5%(1,173억유로)로 예측하였으나, 최근 경기회복과 대규모 국채발행계획을 반영하여 GDP 대비 8.2%(1,492억유로)로 전망
 - 2009년 재정적자는 경제위기를 반영하여 GDP 대비 8.2%로 전망하였으나 하반기에 경기회복이 가시화되면서 GDP 대비 7.9%로 개선
 - 2010년 수정예산(PLFR 2010)에 의해 1.4%로 상향조정된 경제성장률을 반영, 재정적자는 GDP 대비 8.2%(1,492억유로)로 유지될 전망
 - 2010년 예산안(9월 발표)에 의하면 재정적자는 GDP 대비 8.5%로 예상, 이는 사업소세 개혁으로 인한 일시적인 세입감소부문을 제외하면 GDP 대비 8.2%로 2009년과 동일

- 2010년 국가부채는 GDP 대비 84.0%(2009년 대비 7% 증가)일 것으로 전망하였으나 최근 경기회복을 반영하여 GDP 대비 83.2%로 개선될 것으로 전망
 - 2009년 국가부채는 GDP 대비 77.1%(2008년 대비 9.7% 증가)로 이는 경제위기로 인한 GDP 증가율 감소에 기인한 것임
 - 수정예산(PLFR 2010)에 의하면 1.4%로 상향조정된 경제성장률을 반영, 국가부채도 GDP 대비 83.2%로 개선될 전망

2. 예산기조

- 2010년 예산안(PLF 2010)은 최악의 경제 불황에 대비 1) 작년에 이어 주요 경제위기 대응정책을 집행 및 연장시행 2) 미래성장산업을 육성 및 지원하고 3) 지출통제를 통한 재정적자 감소를 주요 내용으로 함
 - 주요 세입 및 세출 정책은 다음과 같음
 - 지출통제를 통한 재정적자감소 정책은 제4장 ‘나. 재정건전화’에서 자세하게 설명

가. 세입내역

- 기업 세제혜택 확대(사업소세 개혁, 연구개발비관련 세금공제 등)와 녹색성장을 위한 탄소세 도입이 주요 내용임
 - 조세수입은 사업소세 개혁 등 감세정책에도 불구하고 경기가 호전되면서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세입이 증가, 전년 대비 18.9% (25,230억유로) 증가
 - 사업소세 개혁으로 2010년 재정적자의 약 117억유로에 해당하는 세입감소가 예상되나 기업에게는 74억유로에 해당하는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전망
 - 탄소세 도입으로 인한 순세입(환급금 제외)은 15억유로로 예상
 - 세외 수입은 전년 대비 22.2%(약 7억유로) 감소한 149억유로인데 이는 2009년에 차관회수 등으로 일시적으로 수입이 증가하였기 때문

나. 세출내역

- 경제위기 대응정책으로 인한 재정지출이 감소하고 지출통제정책을 지속적으로 사용, 세출은 전년 대비 1.3%의 증가율로 둔화될 것으로 전망되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 2009년도 실시된 경제위기 대응정책 연장선하에서 고용활성화 및 자동차산업 지원 정책을 위주로 71억유로 규모의 경기회복 정책 실시 예정 (주요내용은 제4장 ‘가.

경제위기 대응조치'에 정리)

- 분야별 지출은 전년도에 비하여 거의 유사하나 경제위기의 영향력이 큰 부문은 지출이 전년 대비 증가
 - 사회통합 및 기회균등 부문: 전년 대비 약 10%(11억유로) 증가
 - 주택 및 건설 부문: 전년 대비 약 5%(4억유로) 증가
 - 건강 복지 부문: 전년 대비 약 6%(1억유로) 증가
- 법무부 개혁과 관련하여 전년 대비 4%나 증가하였으며 특히 공무원 인력을 400명 더 충원할 예정
 - 프랑스 정부는 공무원 인력 축소를 통한 비용절감을 추진하고 있으므로 위와 같은 충원은 상당히 이례적임

<표 IV-3> 2009-2011 미션별 세출 내역

(단위: 십억유로)

미션		2009 본(수정)예산	2010 예산안
Action extérieure de l'Etat	외교	2.51	2.63
Administration générale et territoriale de l'Etat	일반공공행정	2.59	2.60
Agriculture, pêche, alimentation, forêt et affaires rurales	농업·임업·수산업	3.47	3.45
Aide publique au développement	공공보조(저소득층 지원·외국인 이민자 지원 등)	3.15	3.52
Anciens combattants, mémoire et liens avec la nation	퇴역군인 지원	3.47	3.43
Conseil et contrôle de l'Etat	정부위원회 및 행정재판	0.55	0.57
Culture	문화	2.78	2.92
Défense	국방	37.33	37.15

주: 1) 2009년 자료는 LFI 2009, 2009년 경제위기대응정책 지출규모는 PLFR 2009 참고, 2010년 자료는 PLF 2010 기준으로 작성

2) 세출내역은 CP (CRÉDITS de Payment)을 기준으로 작성

<표 IV-3> 의 계속

미션		2009 본(수정)예산	2010 예산안
Direction de l'action du Gouvernement	국가정책방향(정책통합, 자유 및 권리보호, EU내 프랑스 지위 확보)	0.53	0.55
Ecologie, développement et aménagement durables	환경친화 및 지속가능개발	9.92	10.15
Economie	산업 및 기업 지원	1.94	1.94
Enseignement scolaire	교육	59.91	60.85
Gestion des finances publiques et des ressources humaines	공공재정 및 인적자원 관리 (예산 및 공공개혁 관련 정책)	11.31	11.58
Immigration, asile et intégration	이민 및 통합정책	0.51	0.56
Justice	법무부	6.63	6.86
Médias	언론	1.01	1.15
Outre-mer	프랑스령 국가들에 대한 지원	1.87	1.99
Politique des territoires	균형발전정책	3.72	0.38
Recherche et enseignement supérieur	R&D 및 고등교육	24.10	24.81
Régimes sociaux et de retraite	은퇴자 지원	5.20	5.73
Relations avec les collectivités territoriales	지방재정지원	2.49	2.51
Santé	건강 복지	1.15	1.20
Sécurité	치안	16.18	16.40
Sécurité civile	시민안정 (자연재해 및 화재등)	0.42	0.43
Solidarité, insertion et égalité des chances	사회통합 및 기회균등	11.13	12.37

<표 IV-3> 의 계속

미션		2009 본(수정)예산	2010 예산안
Sport, jeunesse et vie associative	체육 및 건강·청소년 지원	0.79	0.85
Travail et emploi	노동 및 고용	12.16	11.41
Ville et logement	건설 및 주택	7.66	7.81
Engagements financiers de l'Etat	정부재정관리 (부채 관리·국채발행 등)	44.64	44.19
Provisions	예비비	0.21	0.12
Plan de relance de l'économie	경제위기대응정책	12.56	4.10
Pouvoirs publics	의회·헌법위원회 등	1.02	1.02
합계		292.90	285.23

주: 1. 2009년 자료는 LFI 2009, 2009년 경제위기대응정책 지출규모는 PLFR 2009 참고, 2010년 자료는 PLF 2010 기준으로 작성
 2. 세출내역은 CP (CRÉDITS de Payment)을 기준으로 작성

다. 의회 주요 수정 내용

- 국회심의 및 의결로 2010년 본예산(LFI 2010)에 의해 일부 수정되었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 ‘Scellier’ 혜택을 2010년까지 연장 시행하여 임대부동산 투자자의 경우 2010년까지 25% 세금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음(2011년부터는 세금감면 혜택이 15%로 줄어들 예정)
 - 부유세(Impôt de Solidarité sur la Fortune) 대상을 중소기업에 대한 투자액으로 세제혜택 확대
 - 사업소세 개혁으로 인한 세액부족분에 대해 지역경제기여세(CET: contribution économique territoriale) 부과대상을 확대하여 약 40억유로의 세수 확대 (본예산에

서는 연매출이 50만유로 이상 기업에게 적용되었으나 상원의 수정으로 연매출이 152,500유로 이상인 기업에게 부과. 단, 연매출이 152,500 ~ 500,000 유로인 기업에는 세금감면 혜택을 주기로 함)

- 개인이 받을 수 있는 세액공제 한도 감소 (2010년 이전 : 25,000유로+과세소득의 10% → 2010년 이후: 20,000유로+과세소득의 8%)

※ 사업소세 개정내용

- 사업소세는 지역기여세(CLA: Cotisation Locale d'Activité) 부문으로 변경되어 부가세(CC: Cotisation Complémentaire)와 함께 지역경제기여세(CE)로 통합 (CET=CLA+CC)
- 지역기여세는 과세대상을 건물 및 토지에 한정, 동산을 포함하는 현재 과세기준으로 계산한 수치보다 약 15%만큼 감소

3. 예산안 내용 (PLF 2010 및 PLFR 2010)

- (예산안: PLF 2010 기준) 2010년은 경제위기 대응정책 관련 재정지출이 2009년에 비해 감소하나 사업소세 개혁으로 세수입이 크게 줄어들면서 재정적자는 전년도에 비해 약간 증가
 - (세입) 경기가 호전되면서 총세입(Total recettes nettes du budget général)은 2009년 대비 15.5% 증가
 - 경기가 호전되면서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가 전년 대비 증가할 것으로 예상
 - CO₂ 1톤당 17유로(점진적으로 세율을 늘릴 계획)의 세율로 탄소세 부과 예정
 - 사업소세 개혁으로 인한 세입 감소분은 117억유로로 세수부족분은 탄소세 등으로 보충할 예정
 - (세출) 경제위기 대응정책으로 인한 재정지출이 감소하면서 세출은 전년 대비 1.3%의 증가율로 둔화될 것으로 전망
 - 일반회계 세출부문은 오히려 감소하였으나 고용시장 불황으로 인한 사회보장관련 비용 증가(사회보장부문 재정적자 300억유로)
 - (재정적자) 2010년 프랑스 재정적자는 GDP 대비 8.5%(약 1,173억유로), 사업소세로 인한 일시적인 영향력을 제외하면 재정적자는 GDP 대비 8.2%임

- (수정예산: PLFR 2010 기준) 2009년 하반기부터 개선된 경제상황을 반영하고 350억유로 규모의 미래투자계획(les investissements d'avenir) 및 관련 재원확보방안을 포함한 수정예산 발표
 - 2009년 하반기부터 경기가 회복되면서 본예산보다 총세입이 31억유로 증가
 - 헌법위원회의 위헌판결을 반영, 탄소세를 포함한 세제관련 차별적인 조치(특별계층에 대한 감세 및 환급정책)를 시정 (예산안보다 세입 22억유로 감소 예측)
 - 상향조정된 경제성장률을 반영, 법인세 및 소득세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 (예산안보다 36억유로 증가 예측)
 - 탈세방지정책으로 인한 추가세입으로 7억유로 예상
 - 비조세수입이 10억유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
 - 금융업 종사자의 상여금 (보너스)에 세금 부과 예정

- 미래투자계획(les investissements d'avenir)을 위한 재원확보방안으로 대규모 국채를 발행할 예정이나 이러한 국채발행이 2010년 재정적자에 미치는 영향은 GDP의 0.1%(22억~25억유로)로 제한적일 것으로 예측
- 상향조정된 경제성장률(0.75% → 1.4%)을 반영하고 대규모 국채발행 관련 비용을 포함한 재정적자는 GDP 대비 8.2%(본예산보다 319억유로 증가)로 전망

4. 주요 재정정책

가. 경제위기 대응 조치

- 2010년 위기 대응정책(Plan de relance) 관련 예산규모는 70억유로로 주로 기업친화적인 세금공제, 자동차산업 지원정책, 저소득층 지원 및 고용확대 정책으로 사용될 예정
 - 2009년에 시행된 총 390억유로 규모의 경제위기 대응정책과 비교하면 2010년 경제위기 대응정책 관련 예산규모는 현저히 감소한 것임(당초에는 260억 규모로 발표)
 - (재정지출) 위기 대응정책으로 인한 재정지출은 총 41억유로 규모로 기업투자 활성화와 고용증진이라는 목표 아래 집행될 예정
 - 고용창출을 위해 사회적투자기금(FISG: le Fonds d'investissement social)에 14억유로 지원 예정
 - FISG는 경제위기대응정책의 일환으로 만들어진 기금(25억~30억유로 규모)으로 2009-10년 동안 한시적으로 운영될 예정이며 고용확대 및 취업교육 등의 목적으로 사용되며 정부투자 외에 기업들의 기부금으로 이루어짐
 - 이 중 약 2억유로 정도가 청년계층의 고용창출을 위해 투입
 - 중앙정부는 GDP의 약 0.1% 정도를 부담할 것으로 예상
 - 종업원 수가 10명 미만인 기업의 고용지원 정책을 2010년 6월 30일까지 연장할 예정이며 이에 4.1억유로 예산 배정
 - 임금노동자에 대한 임금보충수당(RSTA: Le revenu supplémentaire temporaire d'activité)으로 2억 8천만 유로 배정
 - RSTA: le territoire de Guadeloupe, de Martinique, de Guyane, de la Réunion, de Saint Martin, de Saint-Barthélemy et de Saint-Pierre et Miquelon 등의 지역(프랑스령 국가) 에서 일하는 저소득 임금노동자(폴타임 기준, 월급이 1872.82 유로(1.4 Smic) 이하)에게 제공되는 수당
 - 이 외 고용창출과 관련된 예산 7억유로 지원 예정

- 신차 구입 보조금으로 2.4억유로 지원하지만 점차적으로 폐지(1분기: 700유로, 2분기: 500유로)
- 저소득층 대상 주택자금 용자시 제로금리로 대출하는 제도를 2012년 12월까지 연장 시행
- (세제혜택) 기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25억유로 규모의 기술개발비 세액공제(CIR: Le Crédit d'impôt Recherche) 예정
 - CIR은 기업들에게 법인세 면제를 통해 연구개발 투자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으로 연구개발 인건비, 연구개발 하청작업, 특허출원 경비 등을 비롯해 광범위한 연구 관련 지출에 대한 감세 혜택을 부여하는 제도

나. 재정건전화

- 프랑스는 2008년 이후로 정부지출(일반회계)을 강력하게 통제하고자 함
 - 경제위기 대응정책을 제외한 정부지출부문(일반회계)은 연간 물가상승률 이상 증가하지 못하도록 통제
 - 2010년 세출은 경제위기 대응정책은 제외하고 1.2~1.75%의 증가율을 보일 것으로 예상
 - 지방정부 지출 역시 물가상승률 이상 증가하지 못하도록 통제
 - 정부부문 고용제한 및 인건비 통제를 통해 비용절감 노력
 - 이러한 지출통제를 통해 매년 GDP의 1%에 해당하는 재정적자 감소를 목표, 2013년에는 재정적자를 GDP 대비 5% 수준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 (지방정부지출에도 이러한 지출 원칙 적용)
- 2008년 7월 개헌에 의거, 헌법 34조에 따르면 프로그램법에 의해 다년도예산의 가이드라인을 정하고 이는 균형재정수지를 목표로 해야 함
 - 그러나 EC의 11월 Commission recommendation에 의하면 이러한 조항은 강제성을 가지고 있지는 않음

다. 고용촉진 · 지원

- 실업률이 높은 프랑스는 약 114억유로의 고용관련 예산에 더하여 경제위기 대응정책 (2009년-2010년)에서 관련 정책을 병행 추진하고 있으며, 이 중 고용 관련 부분은 14억유로 정도임
 - 프랑스의 실업률은 OECD 국가 평균치(8.8%)보다 높은 10.0%로 특히 청년층 실업 문제가 매우 심각함(2009년 11월, OECD 통계기준)
 - 2010년 고용 관련 예산정책 방향은 1) 실업 억제 및 출구전략 대비 2) 관련 공공서비스의 지속적 혁신 3) 정책 효율성 증대 및 정부정책개혁보고서 (RGPP: La Révision Générale des Politiques Publiques) 시행 등임
 - RGPP: 사르코지 대통령의 공공부문 개혁 프로그램으로, 이 중 고용과 관련해서는 적극적 연대소득에 대한 기존의 4개 사회통합계획을 일원화한 것이 있음. 유연성을 높이되 교육 관련 부분을 강화한 것이 특징

- 고용 관련 예산 항목(프로그램)별 주요 내용
 - 고용증대를 위한 지원: 실업 감소와 고용 증대 및 고용의 장기적 지속을 위한 노력, 특히 취약계층(청년, 노년층 및 장애인) 취업 지원
 - 경제적 변화 및 고용 개발 : 보조금 지원 및 사회보험료 등 부담금 면제, 직업훈련 및 교육
 - 고용의 질 제고 및 의사소통 증진: 작업장 안전 및 보건, 사회적 소통 증진 등
 - 고용정책에 관한 기안, 실행 및 평가

<표 IV-4> 프랑스 FY2009-2010 고용관련 예산

(단위: 십억유로, %)

세부 프로그램	2009 본예산 (LFI)	2010 예산안 (PLF)	증가율
고용증대노력	5.98	5.89	-1.5
경제적 변화 및 고용 개발에 따른 비용지원	5.25	4.64	-11.6
고용의 질 제고 및 소통 증진	0.05	0.08	60.0
고용정책 기안, 실행 및 평가	0.8	0.8	0

주: 증가율은 저자가 직접 계산

□ 고용 유지 및 지원 (소극적 정책)

- 위기대응 한시적 정책: 1) 신규 실업자에 대한 퇴직금을 2010년 6월까지 500유로 보조 2) 2억 8천만유로 규모의 임금보충수단(RSTA) 기한 연장
- 위기대응 장기적 정책: 1) 최저소득계층에 대한 개인소득세 2/3 감면 및 세제 혜택 2) 실업급여 적용대상을 6개월 이상 근로한 자에서 4개월 이상으로 확대

□ 고용창출(적극적 정책)의 경우, 2010년은 2009년 확립된 계획을 지속 추진, 구체화하는 단계임

- 위기대응 한시적 정책: 1) 10명 미만 기업(TPE)의 신규 고용자에 대한 사회보장부 담금 감면(2010년 6월까지) 2) 사회적 투자기금(FISO)에 2009년 13억, 2010년 14억 유로(추정) 투자 예정
- 위기 이후 장기적 정책
 - 1) 단시간 근로자(Chômage Partiel⁸⁾)의 연간 근로시간 최대치 연장(연간 600시간에서 1,000시간) 및 보조금 인상(이전 임금의 50%에서 60%)

8) 일종의 임금피크제로 해고 대신 근로시간을 줄이고 임금을 삭감하는 방식으로 노동비용을 감소시키거나 반드시 정년과 연관되는 것은 아님. 이 제도를 행사할 수 있는 경우는 경기 침체, 천재지변, 기타 사업장의 예외적 상황이 발생하는 때 등 법으로 정함

- 2) 능동적 연대수입(RSA: Revenu de Solidarité Active)의 전국적 확대 실시 및 2년 이상 근무한 25세 미만 근로자에게 확대 적용
- RSA: 기존의 RMI(Revenu Minimum d'insertion)에 따르면 취업 직후 보조금이 만료되는데, 프랑스의 높은 소득세(저임금에 대한 소득세율(49.6%)이 EU 평균(41%)에 비해 높음)로 인해 취업 후 가계소득이 오히려 감소, 구직을 포기하는 유인이 발생하는 등 '실업 함정(inactivity trap)' 문제가 생김. 이를 방지하고자 보조금을 점차 경감시킨 뒤 만료(smoothing)하는 방식으로 제도를 정비한 것
- 3) 국가고용센터(ANPE)와 실업보험담당기구(ASSEDIC)의 합병을 더욱 가속화하여 one-stop 서비스로 효율성을 높이고, 취업 정보 제공 및 상담을 통한 고용 증대 및 실업복지 의존도 완화
- 4) PES(Public Employment Services) 조건 강화(2008): 수혜자는 공공부문 일자리 제안에 대해 최대 2회까지만 거절할 수 있으며, 이후부터는 2달간의 실업급여를 포함한 복지를 포기하거나 제안을 반드시 수용해야 함
- 5) France Emploi 기구 신설하여 1) 실업자 등록 및 각종 복지혜택 신청 2) 구직자의 컨택 포인트 3) 개인별로 특화된 고용플랜 제공 등을 담당토록 함
- 6) 직업안정공동기금(Fonds paritaire de sécurisation des parcours professionnels): 9억유로 규모, 고용기업이 일부 부담하여 구직자 및 비숙련 노동자, 청년 등을 대상으로 직업교육, 커리어 개발 및 고용안정 노력
- 7) 2년 이상 근무한 경우, 실직 또는 이직하더라도 재직 당시 평생교육권한(DIF)을 통해 기득한 교육시간을 계속 소진하여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개정
- DIF (Droit individuel à la formation): 개인이 고용기업에 대해 직업훈련을 받을 권리(2004년 제정)로서 유급(근무시간을 전환하여 교육시간을 사용하는 경우 전액, 근무시간 외 교육시간을 사용하면 반액 급여 추가 지급)으로 교육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산업, 기업 및 개인의 경력에 따라 받을 수 있는 교육 시간, 즉 권리의 정도는 다름

- 8) 26세 이상의 구직자가 Professionalisation Contract를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수혜대상을 능동적 연대수입(RSA) 또는 기타 보조금 수혜자 및 장애인에게 확대
- Professionalisation Contract: 일종의 도제계약으로 취업시장에서 경력의 중요성이 커지면서 기업에서 지도교사를 배정하면 관련 교육 비용에 대해 정부가 지원, 청년층 취업을 도움
- 9) 미래투자계획(Investissements d'avenir)에서 청년층에 대한 직업교육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직업교육기관 및 기숙사 설립에 5억유로 지원 예정